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있어서

메이슨 캐피탈 엘.피. (MASON CAPITAL L.P.)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MASON MANAGEMENT LLC)

*를 청구인들로 하고*

v.

대한민국

*을 피청구국으로 하는,*

---

피청구국의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

---

2019. 1. 25.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법인 (유) 광장

WHITE & CASE<sup>LLP</sup>

*피청구국의 대리인*

---

---

## 목 차

I.	서론.....	1
II.	중재판정부는 GP 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3
	A. GP 는 케이먼 펀드를 위하여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4
	B. GP 는 FTA 상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9
III.	GP 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4
IV.	청구 취지.....	18
V.	권리의 유보.....	18

### 별첨 A – 절차 일정 제안

\* \* \*

## I. 서론

1.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피청구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제 11.20 조 제 6 항 및 제 7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합니다.

2. FTA 제 11.20 조 제 6 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제 11.20 조 제 7 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제 6 항에 따른 이의제기와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sup>1</sup> 피청구국은 이러한 조항들에 따라 두 가지 본안전 이의를 제기하는 바, 만약 각 이의가 인용될 경우 이는 추후 중재절차를 현저하게 단축시킬 것입니다.

3. 본 중재에서의 청구인들은 메이슨 매니지먼트 엘엘씨(이하 “**업무집행사원**” 또는 “**GP**”)와 메이슨 캐피탈 엘.피.(통칭하여 “**청구인들**”)로서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 속한 회사들입니다. 청구인들은 피청구국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와 제일모직 주식회사(이하 “**제일모직**”) 사이의 2015 년 7 월 합병과 관련하여 FTA 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sup>2</sup> 피청구국은 이러한 청구인들의 FTA 위반 및 손해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4. 아래 설명된 바와 같이, GP 의 중재 제기는 두 가지 이유로 관할권 단계에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

<sup>1</sup> FTA 제 11.20 조 제 7 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신속절차 요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부가 2018 년 12 월 11 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이 45 일 기한은 2019 년 1 월 25 일에 만료됩니다.

<sup>2</sup> 2018 년 9 월 13 일자 메이슨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64-89 항.

5. 첫째, GP 는 단지 명의상의 소유자로서 삼성물산 및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케이먼제도의 국적을 가진 또 다른 메이슨 회사였습니다. FTA 및 국제법에 따르면, GP 는 제 3 의 수익자를 대신하여 중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GP 는 FTA 제 11.28 조에 따라 요구되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 가 규정하고 있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GP 의 청구는 인적 관할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6. 둘째, 인적 관할의 결여와는 별도로, GP 는 스스로 입은 손해가 없으므로 그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FTA 와 국제법은 모두 제 3 자의 이익을 위한 GP 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GP 의 손해배상청구는 FTA 제 11.20 조 제 6 항에 따라 각하되어야 합니다.

7. FTA 제 11.20 조 제 6 항 및 제 7 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본안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지”해야 하며 분쟁이 중재판정부의 권능 내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의 제기”와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이의 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결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언에 따르면, 절차를 분리하여 본안전 단계에서 피청구국의 본안전 이의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피청구국이 증명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청구국의 본안전 이의제기가 인용될 경우, 두 청구인들 중 한 청구인이 중재 제기한 부분은 전부 각하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본 사건의 전체 청구금액 중 약 64% 상당이 줄어들게 됩니다.<sup>3</sup>

8. FTA 제 11.20 조 제 7 항에 따라, 한국은 이러한 본안전 이의제기가 신속절차로써 결정될 것과 관련 주장을 담은 서면들이 제출된 후 심리 절차를 개최할 것을 신청하는 바입니다. 한국이 제안하는 절차에 관한 일정은 별첨 A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sup>3</sup> GP 가 보유한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지분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투자액 전체의 약 64%를 차지합니다. 2018 년 9 월 13 일자 메이슨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 25 항 참조.

## II. 중재판정부는 GP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9. 관할에 대한 국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국제 법원이나 판정부에 피소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sup>4</sup> 국가의 동의는 “추정되어서는 안 되며 명시적인 선언이나 동의를 나타내는 행동으로써 입증되어야” 합니다.<sup>5</sup> 청구인들은 국가의 동의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직접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sup>6</sup> 청구인이 관련 협정상 “투자자”이고 나아가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포함하여,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유무 결정과 관련된 사실은 관할권의 심리 단계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sup>7</sup>

---

<sup>4</sup> Dolzer 교수와 Schreuer 교수의 의견과 같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중재 동의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필수 불가결한 요건입니다.” Rudolf Dolzer & Christoph Schreuer, *PRINCIPLES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2d ed. 2012) (RLA-11), 254 페이지. *Garanti Koza LLP v. Turkmenistan*, ICSID 사건번호 ARB/11/20, 2013. 7. 3.자, 동의를 부존재를 이유로 한 관할권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RLA-16), 21 항 (“국가의 동의 없이 국가의 분쟁이 중재에 회부 되도록 강제될 수는 없다”는 것만큼 국제법상 확실하게 확립된 법리는 많지 않다.”) (*Ambatielos* 사건(*Greece v. United Kingdom*), 1953. 5. 9.자 판정, I.C.J. Reports 1953, 19 페이지에서 재인용) 참조.

<sup>5</sup> *Garanti Koza LLP v. Turkmenistan*, ICSID 사건번호 ARB/11/20, 2013. 7. 3.자, 동의를 부존재를 이유로 한 관할권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RLA-16), 21 항.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11/7, 2014. 4. 3.자 중재판정 (RLA-18), 117 항 (ICJ 와 NAFTA 법리를 인용하며) (“자발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는’ 동의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중재 합의의 존재 및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추정을 받지 못한다.’”) 참조.

<sup>6</sup> *Emmis International Holding, B.V., et al. v. Hungary*, ICSID 사건번호 ARB/12/2, 2014. 4. 16.자 중재판정 (RLA-19), 171-173 항 (“중재판정부는 이 문제를 관할 단계에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이 사건의 관점에서, 청구인들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투자를 보유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National Gas S.A.E. v.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11/7, 2014. 4. 3.자 중재판정 (RLA-18), 118 항 (“동의를 포함한 관할권 입증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비록 특정한 관할권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것이 피청구국이라고 할지라도, 피청구국이 본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976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제 24 조 제 1 항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나 방어를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조.

<sup>7</sup> *Khan Resources Inc., et al. v. Government of Mongolia*,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2012. 7. 25.자 관할권 관련 결정 (RLA-13), 322 항 (“본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에, 오로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유무 결정과

10. 한국의 중재 관할권에 관한 동의는 FTA 제 11.16 조 및 제 11.28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P는 GP 및 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사실들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A. GP는 케이먼 펀드를 위하여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11. FTA 제 11.16 조 제 1 항은 GP가 “자기자신을 위하여” 및 한국에 설립된 자회사를 위하여 청구를 “중재에 제기”하는 것을 허용할 뿐, 다른 제 3자를 대신하여 중재 제기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sup>8</sup> 이러한 제한은 “청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청구만을 제기할 수 있고, 제 3자를 위하여(명의자, 대리인 또는 다른 자격으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국제 투자법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sup>9</sup>

12.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에서(이하 “**중재통보**”), GP는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승인했을 당시 “의결권 있는 삼성물산 보통주식 1,951,925 주와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보통주식 52,466 주(이하 “**삼성 주식**”)를 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GP가 “FTA에 따른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

관련된 사실관계는 관할권 심리 단계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Blue Bank International & Trust (Barbados) Ltd. v. Venezuela*, ICSID 사건번호 ARB/12/20, 2017. 4. 2.자 중재판정(“*Blue Bank v. Venezuela*”) (RLA-23), 66 항 (“관할권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모든 사실은 관할권 심리 단계에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한 청구인은 관할권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강조 추가); *Cementownia "Nowa Huta" S.A. v. Republic of Turkey*, ICSID 사건번호 ARB(AF)/06/2, 2009. 9. 17.자 중재판정 (RLA-9), 112 항 (“투자협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할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관련 시기 - 해당 청구가 근거로 삼고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 에 투자자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sup>8</sup> 자회사를 대신하여 중재 제기한 청구와 관련하여 FTA 제 11.16 조 제 1 항 나호는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up>9</sup>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et al.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사건번호 ARB/06/11, 2015.11.2 일자 취소결정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62 항 (강조 추가).

주장하고 있습니다.<sup>10</sup> 그러나, GP가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인 골드만 삭스가 발행한 “Statement of Holdings”는 삼성 주식이 케이먼제도법상 비과세 리미티드 파트너십인 “메이슨 캐피탈 마스터 펀드 엘피(이하 “케이먼 펀드”) ... 의 계정으로 삼성 주식이 [골드만 삭스의] 장부와 기록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11</sup> 골드만 삭스의 Statement of Holdings는 GP가 주장하는 삼성 주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GP가 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13. 나아가 GP는 “케이먼 펀드]를 수익자로 한 법정 수탁자로서 [삼성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sup>12</sup> 가사 GP가 법적으로 삼성 주식을 소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법률상 또는 명의상의 소유자인 GP와 수익적 소유자인 케이먼 펀드 사이에 나뉘어져 있던 것입니다.

14. 투자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수익적 소유자와 법률상의 소유자로 나뉘어지는 경우, “국제법상의 지배적인 견해는 수익적 소유자에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구제수단을 부여”하고 있습니다.<sup>13</sup> 투자중재 사건의 중재판정부들은 이러한 “이론의

---

<sup>10</sup> 중재통보, 58 항 (강조 추가).

<sup>11</sup> 2018. 9. 10.자 골드만 삭스 Brokerage Letter, (C-29) (강조 추가).

<sup>12</sup> 중재통보, 각주 77 (강조 추가).

<sup>13</sup>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59 항. David J. Bederman, *Beneficial Ownership of International Claims*, 38 INT'L & COMPARATIVE L. Q. 935 (1989. 10.) (RLA-2), 936 페이지 (“국제법에 관한 권위자들은, 국제적 청구에 있어서의 정당한 당사자는 명의상 또는 기록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질적이고 수익적인 소유자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재산의 수익적 (명의상이 아닌) 소유자가 국제 법정에서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은 국제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참조 (강조 추가).

여지가 없는” 원칙을 적용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대신하여 법률상 또는 명의상의 소유자가 중재 제기한 청구를 각하하여 왔습니다.<sup>14</sup>

15. 예를 들어, *Occidental v. Ecuador* 의 취소위원회(Annulment Committee)는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이하 “OEPC”)가 분쟁의 대상인 투자에 대하여 60%의 수익권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가 OEPC 가 제기한 청구 전체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OEPC 는 나머지 40%의 수익권을 버뮤다 법인인 AEC 에 매각하였으며, AEC 는 이를 다시 중국 법인인 Andes Petroleum Co. (이하 “Andes”)에 매각하였습니다.<sup>15</sup> 취소위원회는 OEPC 가 “[40%의 수익권에 관한] 외관상 소유권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수익적 소유자인 Andes 를 대신하여 및 그것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sup>16</sup> 취소위원회는 “수익적 소유자인 AEC/Andes 만이 이익

---

<sup>14</sup>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59 항.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et al.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사건번호 ARB/06/11, Stern 교수의 반대의견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48-149 항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에 관해서는, 법적인 소유 명의와 수익적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에 관한 기존 원칙과 판례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국제법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자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M.M. Whiteman, 8 *Digest of International Law* (1967) (RLA-1), 1261-1263 페이지 (“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서, 법적인 소유자 또는 수탁자가 [체약국]의 국민이었고, 수익적 소유자가 국민이 아닌 경우 그 청구는 각하되었다.”) 참조.

<sup>15</sup>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65, 268 항 참조. 취소위원회는 *Occidental*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이 OEPC 가 AEC/Andes 에 대한 투자의 수익적 이익 40%를 유효하게 양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16-249 항 참조. *Occidental*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양도가 이루어 졌다면 40% 이익에 대한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and Occidental Exploration and Production Company, et al. v. The Republic of Ecuador*, ICSID 사건번호 ARB/06/11, 2012.10. 5.자 중재판정 (RLA-14), 614 항, 각주 77 참조.

<sup>16</sup>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68 항.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67 항 (“실제로는, 수탁자는 (Blue Bank) 단순히 제 3 자 – 궁극적으로 수익자를 위하여 ... –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조.

침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명의자인 OEPC는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으로 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sup>17</sup>

16. *Occidental*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면서, 취소위원회는 당해 중재판정에서 Stern 교수의 반대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반대의견에서 Stern 교수는 “법적인 소유 명의와 수익적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에 관한 기존 원칙과 판례를 자세히 검토해 본 결과, 국제법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닌 자에게만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sup>18</sup> Stern 교수는 “수익적 소유자인 AEC/Andes만이 그것의 이익 침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으며, OEPC는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으로 청구를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sup>19</sup> 위 사건에서 OEPC의 청구 전체에 대한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중국 법인인 Andes에 대하여, 미국-에콰도르의 양자간 투자협정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sup>20</sup> 따라서, OEPC는 “미국 회사가 아닌 제 3자의 투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투자에 관한 손실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up>21</sup>

17. *Impregilo v. Pakistan*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비법인 합작 투자 기구인 GBC를 대신하여 Impregilo가 중재 제기한 청구를 유사한 취지로 관할이 없다고 각하하면서, GBC

---

<sup>17</sup>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65 항.

<sup>18</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48 항 (강조 추가).

<sup>19</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51 항. *Zhinvali Development Ltd. v. Republic of Georgia*, ICSID 사건번호 ARB/00/1, 2003. 1. 2.자 중재판정 (RLA-4), 396-405 항 (청구인이 주주들을 대신하여 청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 참조.

<sup>20</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44 항. *Occidental* 취소 결정 (RLA-21), 264 항 (“보호받는 투자자는 보호받는 투자에 대한 수익적 소유권 및 관리권을 보호받지 않는 제 3 자에게 양도한 다음, 중재판정부가 그 제 3자와 투자유치국 간의 분쟁을 판정할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협정을 체결할 때 투자유치국이 합의한 한도를 넘어서서 인적 관할이 통제 불가능하게 확대되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참조.

<sup>21</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44 항.

및 합작 투자 파트너들은 해당 이탈리아-파키스탄 양자간 투자협정에 따라 보호받는 투자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sup>22</sup> Impregilo 는 자신이 당해 투자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GBC 를 대표하고 관리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자신이 GBC 의 손실 전체에 대한 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sup>23</sup>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GBC 나 합작 투자 파트너는 관련 협정에 따라 보호 받는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탈리아 국적의 회사가 이들을 위하여 중재를 제기하였다고 보더라도 BIT 에서 [관할권에 대한 파키스탄의 동의를] 다른 국가의 국민이 제기한 청구에까지 확장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GBC 또는 Impregilo 의 합작 투자 파트너를 위하여 제기된 청구 또는 이들이 입은 손실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sup>24</sup>

18. 삼성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법률상 또는 명의상의 소유자인 GP 와 수익적 소유자인 케이먼 펀드로 나뉘어 지는 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된 FTA 제 11.16 조 제 1 항 및 위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GP 는 케이먼 펀드를 대신하여 청구를 중재 제기할 청구인 적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GP 의 청구는 관할 중 인적 관할의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sup>22</sup> *Impregilo S.p.A. v.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ICSID 사건번호 ARB/03/3, 2005. 4. 22.자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결정 (“*Impregilo v. Pakistan*”) (RLA-6), 144-152 항.

<sup>23</sup> *Impregilo v. Pakistan* (RLA-6), 125, 129 항.

<sup>24</sup> *Impregilo v. Pakistan* (RLA-6), 136-139, 144-153 항. *PSEG Global, Inc., and Konya Ingin Elektrik Üretim ve Ticaret Limited Sirketi v. Republic of Turkey*, ICSID 사건번호 ARB/02/5, 2007. 1. 19.자 중재판정 (RLA-7), 325 항 (“비록 청구인들을 ...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당사자가 부담한 투자 또는 소요 비용에 대하여” 보상 판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함) 참조; *Mihaly International Corp. v. Sri Lanka*, ICSID 사건번호 ARB/00/2, 2002. 3. 15.자 중재판정 (RLA-3), 24-26 항 (미국 법인은 미국-스리랑카 BIT 하에서는 캐나다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권리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정함).

19. 가사 중재판정부가, GP가 제 3자를 대신하여 청구를 중재 제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물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만), GP는 FTA에 따른 “투자자”가 아니므로 GP의 중재 청구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B. GP는 FTA상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 FTA 제 11.28 조는 “투자자”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sup>25</sup> 따라서, GP는 투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sup>26</sup>

21. FTA는 “투자”를 “투자자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sup>27</sup> 이러한 투자의 본질적인 특징들은 중재판정부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sup>28</sup> 예를 들어, *Romak v. Uzbekistan* 사건의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투자”라는 용어에 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일정한 위험이 따르는 출자”라는

---

<sup>25</sup> FTA (CLA-23), 제 11.28 조 (강조 추가).

<sup>26</sup>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64 항 참조.

<sup>27</sup> FTA (CLA-23), 제 11.28 조 (강조 추가).

<sup>28</sup> *Joy Mining Machinery Ltd v. Egypt*, ICSID 사건번호 ARB/03/11, 2004. 8. 6.자 관할권 관련 중재판정 (RLA-5), 53 항(“투자 적격을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요약하자면, 위에 언급된 ICSID 결정들과 그에 대한 해설자들은 문제가 되는 프로젝트가 일정한 기간, 이윤과 수익의 정기성, 위험 요소, 및 실질적 출자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투자유치국의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omak S.A. (Switzerland) v. The Republic of Uzbekistan*,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PCA 사건번호 AA280, 2009. 11. 26.자 중재판정 (“*Romak v. Uzbekistan*”) (RLA-10), 207 항.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sup>29</sup> 투자에 대한 단순한 소유권만으로는 청구인이 투자를 “하였음”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합니다.<sup>30</sup>

22. FTA 상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을 입증하기 위해서는,<sup>31</sup> GP 는 “돈이나 자산의 출자(즉, 자원의 투입)”를 했어야 합니다.<sup>32</sup> “투자의 기본 개념”은 “일정 기간 내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가가 자신의 재정적 수단을 자신의 재정적 위험부담 아래 이용하여 개시하고 수행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sup>33</sup> *KT Asia v. Kazakhstan*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에게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관련된 투자를 한 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 최종 수익적 소유자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sup>34</sup>

---

<sup>29</sup> *Romak v. Uzbekistan (RLA-10)*, 207 항 (“그러므로 중재판정부는 BIT 상 “투자”라는 용어가 (투자자가 ICSID 또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 절차에 의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일부 위험이 따르는 출자를 수반한다는 내재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중재판정부의 이러한 분석은 ‘투자’의 특징으로서 출자, 기간 및 위험이 포함된다고 지속적으로 판시한 다른 중재판정부들의 판단(위 198-204 항 참조)과도 부합한다”) (원문에서 강조).

<sup>30</sup> *KT Asia Investment Group B.V. v.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사건번호 ARB/09/8, 2013. 10. 17.자 중재판정 (“*KT Asia v. Kazakhstan*”) (**RLA-17**), 188-206 항 참조 (주식의 소유권이 투자의 존재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판정); *Caratube International Oil Co. LLP v. The Republic of Kazakhstan*, ICSID 사건번호 ARB/08/12, 2012.6.5.자 중재판정 (“*Caratube v. Kazakhstan*”) (**RLA-12**), 455 항 (“설령 Devincci Hourani 가 CIOC 에 대한 형식적인 소유권과 명의상의 지배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가 주식 및 기타 이익에 대해 지불한 극도로 적은 대가 금액 및 그의 CIOC 에 대한 투자를 설명할 설득력 있는 경제적 동기가 없다. Devincci Hourani 가 한 어떤 종류의 출자나 위험 감수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sup>31</sup> FTA (**CLA-23**), 제 11.28 조.

<sup>32</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170 항.

<sup>33</sup> *Caratube v. Kazakhstan (RLA-12)*, 434 항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ICSID 사건번호 ARB/07/12, 2009. 9. 11.자 관할권 판정 재인용) (강조 추가).

<sup>34</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192-206 항.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38 항 참조 (“잘 알려졌듯이, 투자에는 출자가 필요하다: OPEC [청구인 중 1 인]가 투자 가치의 60%에만 기여하였으며

23.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sup>35</sup> 출자라는 것은 한국에 장기적으로 존재할 의도를 가지고 충분한 기간 동안 투자가 유지될 것을 요구합니다.<sup>36</sup> 예를 들어 *KT Asia v. Kazakhstan* 의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에 대하여 “16 개월은... 매우 짧은 시간”이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투자는, ‘투자’의 정의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sup>37</sup>

24. FTA<sup>38</sup>에 따른 “위험의 감수” 기준은 GP 가 손실의 위험을 감수할 것을 요구합니다.<sup>39</sup>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실제 이루어진 투자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을 의미하며, 다른 투자나 상업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sup>40</sup> 출자와 위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출자 없이는 어떠한 투자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sup>41</sup> 이는 “출자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는 ... (존재하지 않는) 출자를 잃을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sup>42</sup>

---

프로젝트 초기 자본 지출과 운영 비용을 포함하여 투자 가치의 40%는 ACE/Andes [당해 협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제 3 자] 가 지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ICSID 중재판정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더 이상 OPEC 에 속하지 않는 권리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sup>35</sup> *Romak v. Uzbekistan* (RLA-10), 207 항. (강조 삭제)

<sup>36</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207-216 항 참조.

<sup>37</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214-216 항. 또한 208 항(“최소한 2 년에서 5 년사이의 기간을 가진 프로젝트는 기간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판정들이 있다.”) 참조.

<sup>38</sup> FTA (CLA-23), 제 11.28 조.

<sup>39</sup> 예를 들어, *KT Asia v. Kazakhstan* (RLA-17).

<sup>40</sup> *Nova Scotia Power Incorporated v. 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 ICSID 사건번호 ARB(AF)/11/1, 2014. 4. 30.자 중재판정 발취본 (RLA-20), 105 항.

<sup>41</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219 항.

<sup>42</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219 항.

25. 투자에 대한 수익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sup>43</sup> *Blue Bank v. Venezuela* 에서 중재판정부가 언급하였듯이, 청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하지만,” 그것이 “제 3 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자신의 권한으로 자산을 투입하였거나, 위험을 부담하였거나 또는 투자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sup>44</sup> *Blue Bank*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투자를 위한 출자를 하지 않고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은 것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인적 관할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sup>45</sup>

26. GP 는 FTA 상의 의미에 따른 “투자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 GP 가 “자신의 재정적 수단”을 사용하여 삼성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sup>46</sup> GP 가 삼성 주식에 “금전 또는 자산의 출자”를 하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sup>47</sup> 오히려 GP 가 삼성 주식을 케이먼 펀드(FTA 에 따른 보호 대상이 아닌 케이먼 제도의 회사)를 “수익자로 한 법정 수탁자로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삼성 주식이 케이먼 펀드의 자본으로 취득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GP 가 “새로운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단지 삼성 주식의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즉, 케이먼 펀드) ... 가 행한 출자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보는 경우”에는 GP 의 출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sup>48</sup>

---

<sup>43</sup> H. Wehland, *Blue Bank International v Venezuela: When are Trust Asse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J. INT’L ARB (2017) (RLA-22), 956 페이지 (“수익적 소유권은 협정상의 보호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수 있는데, 이는 수익적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sup>44</sup>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63 항.

<sup>45</sup>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72 항.

<sup>46</sup> *Caratube v. Kazakhstan* (RLA-12), 434 항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ICSID 사건번호 ARB/07/12, 2009. 9. 11.자 관할권 존부에 관한 결정 인용).

<sup>47</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170 항. FTA (CLA-23), 제 11.28 조 (“투자”의 정의) 참조.

<sup>48</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192-206 항.

27. 둘째, GP가 “일정 기간 이상” 출자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sup>49</sup> 당시 언론 보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직후이자 두 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하기로 의결한 날까지 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15년 6월말경 GP가 삼성 주식 인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sup>50</sup> GP는 합병 표결로부터 “몇 주 후”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 주식을 사실상 “전량 매도”하였는데, 이는 GP가 삼성 주식을 단 몇 주 동안만 보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up>51</sup>

28. 셋째, GP가 삼성 주식을 “자신의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삼성 주식을 취득하였다거나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는 사정도 없습니다.<sup>52</sup> GP가 삼성 주식에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GP가 “그러한 (존재하지 않는) 출자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sup>53</sup> GP는 케이먼 펀드의 이익을 위하여, 즉

---

<sup>49</sup> *Romak v. Uzbekistan* (RLA-10), 207 항 (강조 삭제); *KT Asia v. Kazakhstan* (RLA-17), 207 항, 이하 참조 (“자원 배분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으면 투자로 볼 수 없다. 기간 요건은 투자의 의미에 내재되어 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간 요건의 문제는 청구인 메이슨 캐피탈 엘.피.를 포함한 모든 청구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피청구국의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피청구국은 메이슨 캐피탈 엘.피.가 요구되는 “투자”로서의 특징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추가적인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sup>50</sup> 서울 경제,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 삼성물산 지분 2.2% 사들여*, (2015.6.26) (Exh. R-1) (삼성물산의 주주 명부에는 메이슨이 최근에 지분 2.2%를 확보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을 설명하고 있음); 중재통보, 25-26 항.

<sup>51</sup> 중재통보, 46 항.

<sup>52</sup> *Caratube v. Kazakhstan* (RLA-12), 434 항 (*Toto Costruzioni Generali S.p.A. v. The Republic of Lebanon*, ICSID 사건번호 ARB/07/12, 2009. 9. 11.자 관할권 존부에 관한 결정 인용).

<sup>53</sup> *KT Asia v. Kazakhstan* (RLA-17), 219 항.

“제 3 자의 이익을 ... 위하여” 행위한 것이며, 그에 따라 삼성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sup>54</sup>

29.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GP 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및 “위험의 감수”를 포함하여, FTA 제 11.28 조에 따른 “투자로서의 특징을 가진” “투자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sup>55</sup> 따라서 GP 는 FTA 제 11.28 조 상의 “투자자”가 아니며, GP 의 청구는 인적 관할 결여를 이유로 각하되어야 합니다.<sup>56</sup>

### III. GP 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30. 설사 중재판정부가 GP 에 대한 인적 관할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GP 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31. FTA 제 11.20 조 제 6 항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제기된 청구가, 법률상의 문제로서, 제 11.26 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는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본안전 문제로 다루고 결정”해야 합니다.<sup>57</sup> FTA 제 11.16 조 제 1 항은, 청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청구인이 그 [FTA 의]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청구를 중재에 제기할 수

---

<sup>54</sup>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63 항; 중재 통보, 각주 77.

<sup>55</sup> FTA (CLA-23), 제 11.28 조.

<sup>56</sup> *Blue Bank v Venezuela* (RLA-23) 164 항 참조. Cementownia "Nowa Huta" S.A. v. Republic of Turkey, ICSID 사건번호 ARB(AF)/06/2, 2009. 9. 17.자 중재판정 (RLA-9), 149, 179 항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부분적 이유는 “청구인이 [관련 협정]의 의미상 투자자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sup>57</sup> FTA (CLA-23), 제 11.20 조 제 6 항 다호. 제 11.20 조 제 6 항 다호에 따른 이의제기를 결정함에 있어,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분쟁 중이 아닌 관련 사실도 검토할 수 있다.”

있습니다.<sup>58</sup> 따라서 FTA는 청구인 본인이 손실을 입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FTA는 제 3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실에 대하여 투자자가 청구를 중재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위 II.A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국제법의 태도와 부합합니다.

32. 국제법상의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 청구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흐름을”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sup>59</sup> 투자에 대한 수익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배상할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sup>60</sup> 이는 *Occidental v. Petroleum*에서 Stern 교수의 견해와 같이, 수익적인 소유권이 없는 청구인은 “처음부터 ... [투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해당 투자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sup>61</sup>

33. *Siag v. Egypt*의 중재판정부는, 이집트 회사인 Siag Touristic의 두 투자자들인 청구인들에게 위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축하였습니다.<sup>62</sup> 분쟁은 Siag Touristic이 이집트 관광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수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sup>63</sup> 관련 매매계약은 추후 토지가 양도되는 경우, 이집트 정부에게 “매각

---

<sup>58</sup> FTA (CLA-23), 제 11.16 조 제 1 항 (강조 추가). 제 11.26 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 그리고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피청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sup>59</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62 항.

<sup>60</sup> H. Wehland, *Blue Bank International v. Venezuela: When Are Trust Asse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34(6) J. INT’L ARB (2017) (RLA-22), 각주 64 (“투자에 관하여 수익적 권리가 없다면, 배상 받을 손해는 없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만약 [Blue Bank] 중재판정부가 청구인이 투자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였을지라도, 청구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손해도 없기 때문에 그 청구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sup>61</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61 항.

<sup>62</sup> *Waguih Elie George Siag and Clorinda Vecchi v. The Arab Republic of Egypt*, ICSID 사건번호 ARB/05/15, 2009.6.1.자 중재 판정 (“*Siag v. Egypt*”) (RLA-8), 14-19 항.

<sup>63</sup> *Siag v. Egypt* (RLA-8), 18 항.

시점의 해당 지역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토지 매매 가치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sup>64</sup> *Siag* 중재판정부는 당해 토지에 대해 청구인들이 오직 50%의 수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sup>65</sup>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하였습니다.<sup>66</sup>

34. 본 사건의 경우, GP는 “최소한” GP가 삼성 주식을 매각한 가격과 한국의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삼성 주식의 “본질가치”를 반영하여 “매각하였을” 가격과의 차액만큼에 해당하는 삼성 주식의 가치 손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sup>67</sup> 한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들을 부인하며 본건 중재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이를 반박할 것입니다. 설령 한국의 행위로 인하여 삼성 주식의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GP의 손해배상 청구는 FTA 제 11.20 조 제 6항의 규정, 즉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닌 경우”<sup>68</sup>에 따르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3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P는 삼성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었고, 따라서 그 경제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sup>69</sup> 가사 한국의 행위가 없었을 경우 GP가 “[삼성 주식]을 그 주식의 내재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매각하였을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sup>70</sup> 해당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GP가 아닌 케이먼 펀드에게 귀속되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가사 GP가 한국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히 저평가된 가격에 두 회사의

---

<sup>64</sup> *Siag v. Egypt (RLA-8)*, 577 항.

<sup>65</sup> *Siag v. Egypt (RLA-8)*, 582 항 (“자산 매각의 경우 청구인들은 매각 가격의 50%를 수령하였을 것”이며 “[이는] 자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수익적 이해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라고 판정).

<sup>66</sup> *Siag v. Egypt (RLA-8)*, 584 항.

<sup>67</sup> 중재 통보, 81-82 항.

<sup>68</sup> FTA (CLA-23), 제 11.20 조 제 6 항.

<sup>69</sup> 중재통보, 각주 77.

<sup>70</sup> 중재통보, 81 항.

주식을 매각하였음”이 증명되더라도,<sup>71</sup> 그로 인한 손실은 케이먼 펀드의 이익을 위해 삼성 주식을 보유한 GP 의 손실이 아닌 케이먼 펀드의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FTA 위반이 “없었다면” GP 가 얻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 이익은, GP 가 그 어떠한 수익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삼성 주식의 매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아닙니다. GP 가 수익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GP 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GP 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sup>72</sup>

36. 결론적으로, GP 는 삼성 주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GP 의 손해배상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며, FTA 제 11.20 조 제 6 항에 의거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sup>71</sup> 중재 통보, 81 항.

<sup>72</sup> *Occidental* 반대 의견 (**RLA-15**), 162 항 참조.

#### IV. 청구 취지

37. 위와 같은 모든 이유들에 비추어,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 a. 다음을 근거로, GP 가 제기한 청구들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관할권이 없음을 선언하고 GP 가 중재 제기한 모든 청구를 각하
  - (i) FTA 상 GP 는 케이먼 펀드를 대신하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및/또는
  - (ii) GP 는 FTA 제 11.28 조에 따른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b. 혹은, GP 의 청구는 법률상의 문제로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있는 청구가 아니라고 선언하고, 이에 따라 GP 가 중재 제기한 청구를 각하; 그리고
- c.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구제수단을 명령

#### V. 권리의 유보

38. 한국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다른 구제수단을 청구하는 것 및 어느 하나 또는 모든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인 관할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포함하여, 본 서면의 내용을 변경 및 보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대한민국

**법무법인 (유한) 광장**

이문성  
남동성  
Robert Wachter  
김경천  
한상훈  
이희웅  
임아영  
신정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04532

---

**WHITE & CASE LLP**

Paul Friedland  
Sven Volkmer  
Insue Kim  
1221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10020-1095  
USA

Jun Hee Kim  
Sebyul Chu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07326

*피청구국의 대리인*

## 별첨 A

### 본안전 이의제기 절차 일정 제안

FTA 제 11.20 조 제 7 항에 따라, 피청구국은 본안전 이의제기가 신속절차로써 결정되며 서면 주장들의 제출 이후에 심리가 열리기를 요청합니다. 피청구국은 제 11.20 조 제 7 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을 위한 180 일의 기간을 33 일간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절차	신청인	기간	일시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	피청구국		2019. 1. 25.
본안전 이의제기 반박 서면	청구인들	본안전 이의제기 서면 제출일로부터 63 일	2019. 3. 29.
본안전 이의제기 답변	피청구국	본안전 이의제기 반박 서면 제출일로부터 56 일	2019. 5. 24.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 (2-3 일, 중재판정부 일정에 따라)	피청구국 및 청구인들	본안전 이의제기 답변 제출일로부터 59 일	2019. 7. 22.이 속한 주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중재판정부	본안전 이의제기에 대한 심리일로부터 약 33 일	2019. 8. 26.